##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83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김도읍・김정재・장동혁

구자근 • 권영진 • 유상범

조배숙 • 박성훈 • 김희정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	제16조(벌칙)
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	
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5천만원 이하의 벌금</u>